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68 발의연월일: 2024. 8. 1.

발 의 자:전진숙·복기왕·안도걸

강유정 • 이기헌 • 전재수

이광희 • 문금주 • 박홍배

송재봉 · 오세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촬영물 등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에 소요된 비용은 촬영물 등을 유 포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한국여성인 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현행법 시행규칙 을 근거로 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기관의 권한을 시행규칙을 근거로 위임·위탁하는 것은 행정조직법정주의에 반하므로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법적근거가 필요하고, 구상권은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행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요청 권한과 구상권 행사를 한국여 성인권진흥원 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법률 제 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는"을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가에"를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는"을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가"를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치단체의 장이"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은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⑥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성폭력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업무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여 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 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 의 장은----물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 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 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 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 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 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국 -----여성가 <u>가에</u>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u>국가는</u>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촬영물등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한다.
- 1. 2. (생략)
- ④ (생략)
- ⑤ <u>국가가</u> 제1항에 따라 촬영 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 용을 지출한 경우 제4항의 성 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 다. <후단 신설>

<신 설>

에게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1.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
<u> </u>
단체의 장이
단체의 장이
단체의 장이 이 경우 구상권 행사 금액
단체의 장이

<신 설>

⑥ (생략)

상권 행사를 위하여 성폭력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따라야 한다.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제1항·제3항·제 5항 및 제6항의 업무를 한국여 성인권진흥원 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⑧ (현행 제6항과 같음)